

## □ 관련규정

- 「지방회계법」 제35조(선금급과 개산급)에 따르면 지출원은 운임, 용선료, 여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3조(세출예산 집행기준) [별표2]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「지방계약법」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완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선금 지급 시 월별·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

## □ 지적사항

사례1>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 비용을 월별(1개월) 또는 분기별(3개월) 지급하지 않고 12개월분 일괄 선납 집행

사례2> 청사 화장실 비데, 사무실 정수기, 공기청정기 임차료 비용을 월별(1개월) 또는 분기별(3개월)로 지급하지 않고 12개월분 일괄 선납 집행

## 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임차료 지급 시 월별·분기별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